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223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5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
나. 제출일 : 2023년 8월 14일
다. 회부일 : 2023년 8월 21일
라. 상정일 :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2023년 9월 1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국장 한영희)

가. 제안 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-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※ 호우 피해 지역인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*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우선 선포('23.7.19.)

* 13개 지자체: 세종시, 충북(청주시, 괴산군), 충남(논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부여군), 전북(익산시, 김제시 죽산면), 경북(예천군, 봉화군, 영주시, 문경시)

나. 주요내용

1) 감면대상자

-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라 함)
-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함)

2) 세목별 감면내역

-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
 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면제한다.
-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 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-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
 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.
-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
 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면제한다.

○ 취득세

-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'특별재난지역' 선포(2023.7.19.)에 따라 재난 피해자* 지원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감면(면제)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* 사망자, 유가족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없을 경우 사실상 보호자))

- ※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,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지원사항 외에도 건강보험·전기·통신·도시가스요금·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사항이 추가됨(출처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2.8.22.). 붙임 참조).

<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>

구분	시군구 단위	읍면동 단위
세종	세종시	-
충북	청주시·괴산군	-
충남	논산시·공주시·청양군·부여군	-
전북	익산시	김제시 죽산면
경북	예천군·봉화군·영주시·문경시	-

나. 동의안 주요 내용

-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지원을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「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 기준」에 따른 것으로,

※ '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 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

-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2023년도 1년간(2023.1.1.~12.31.) 과세하는 부과세목*과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

취득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되,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임(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).

* 주민세(개인분), 자동차세(소유분)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



○ 한편, 재무국은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(48명) 중 2명이고, 전체 유가족(127명) 중 8명으로 조사 되었으며, 감면 대상액은 5개 세목에 394만 3천원* 수준으로 추계하여 보고하고 있음.

* 시세 327만 7천원(재산세 특별시분 포함), 구세 66만 7천원

※ 세목별 주민세 7명, 자동차세 3명, 재산세 4명, 취득세(부동산) 1명, 취득세(자동차) 1명임.

<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감면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부과세목	부과대상	납 기	감면세액			비고
			총 감면액	기감면액	감면 예정액	
합 계			3,943	2,841	1,102	
주민세 개인분	• 사망자유가족(개인, 개인사업자) (지방세법 §81①(1)가목 사업소분 포함)	8월	40	40	-	시세
자동차세 소유분	• 사망자· 유가족 소유 자동차	6월,12월	754	377	377	시세
재산세	• 사망자· 유가족소유토지· 주택등	7월,9월	1,334	627	708	구세
지역자원시설세	• 사망자· 유가족(소방분)		50	32	18	시세
취득세	•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~ 6개월말 내	1,766	1,766	-	시세

※ 서울특별시세 3,277천원(재산세 특별시분 포함), 자치구세 667천원

다. 지방세 감면 근거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제4조제4항)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 - 같은 법 시행령(제2조제5항)에서는 특수한 사유로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- 한편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서는, 재난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자연재난 예시로 호우(豪雨), 강풍 등을 들고 있고,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**호우(豪雨)**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2. (이하 생략)

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따라서, 재난으로서 집중 호우로 인하여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(2023.7.19.)되었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제4조제5항)에서는, 풍수해 등 재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,

-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 취지는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제4조제4항)에 따라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 서울특별시장(재무국)이 해당 유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중 주민세 등 부과세목과 사망자 재산의 상속에 따른 신고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(면제)함으로써,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지난 7월 집중 호우 재난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유가족이 지방세 감면 대상 과세물건(부동산, 자동차 등)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, 본 동의안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에서,
 -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선택적 지원보다는, 재정지원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적 지원 방안이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12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
나.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※ 호우 피해 지역인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*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우선 선포('23.7.19.)

* 13개 지자체: 세종시, 충북(청주시, 괴산군), 충남(논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부여군), 전북(익산시, 김제시 죽산면), 경북(예천군, 봉화군, 영주시, 문경시)

2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-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라 함)
-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함)

나. 세목별 감면내역

○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면제한다.

○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○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.

○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면제한다.

○ 취득세

-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

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○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※ 작성자 : 재무국 세제과 서범하 (☎ 2133-3354)